공상총국, 지재권남용행위금지규정(안)

<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>

중국 공상관리총국은 "지재권남용행위금지규정(안)"을 발표(2014.6.10) 하였는바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 개요>

- □ 이 규정(안)은 독점협의 금지 및 예외기준(즉, 안전지대), 시지남용행위 금지유형(예, 필수시설 허가거절, 거래제한, 끼워 팔기, 불합리한 거래 조건 부가, 차별대우 등), 특정유형의 독점행위, 위법성판단 및 법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
 - 공상총국은 향후 의견수렴(안) 내부검토(수정보완) 및 입법절차를 거쳐 가급적 연말이전에 본 규정을 공포·시행할 계획임

< 주요 세부내용 >

- □ (제정목적)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격려하며,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·제한하는 행위(이하 지재권남용행위)를 금지하고자 반독점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함
 - 아울러, "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 보호"관계에 대해, 양자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함
 - 즉,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제고하며,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
 - □ (개념해석) 지재권남용행위란 경영자가 반독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 하여 지재권을 행사, 독점협의(즉, 카르텔), 시지남용 행위 등 독점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

- 아울러, 관련시장은 반독점법 및 관련시장획정지침에 의거 획정하되,
 지재권·혁신 등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
- □ (독점협의 금지)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울 행사하는 과정에서 독점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되. 안전지대*를 규정함

<안전지대 요건>

- ①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%를 초과하지 않거나,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체기술이 최소 4개 존재할 경우
- ② 경영자와 거래상대방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30%를 초과 하지 않거나,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체기술이 최소 2개 존재할 경우
- □ (시지남용행위 금지) 시장지배적지위를 구비한 경영자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재권 행사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·제한하 는 행위를 금지함
 - 아울러, 그 구체적인 남용행위로서 "지재권허가의 거절, 거래제한, 끼워 팔기, 불합리한 제한조건 부가, 차별대우"행위를 규정함
 - 다만, 그 중 "허가거절"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필수시설로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혁신격려와 경쟁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함

< 세부유형 >

- ① 거래거절: 지재권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수시설인 경우,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지재권을 허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음
- ② 거래제한 :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그 또는 그가 지정한 경영자와 거래토록 하거나, 거래상대방이 그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- ③ 끼워 팔기 :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요건에 동시 부합되는 끼워 팔기행위를 할 수 없음

- ④ **불합리한 제한조건 부가** :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할 수 없음
- ⑤ **차별대우**: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차별 대우할 수 없음
- □ (특정유형의 독점행위) 특허연합경영 등 4가지 특정유형*의 지재권행사 관련, 독점행위(즉, 카르텔, 시지남용행위)의 세부유형을 규정함
 - * 특허연합경영, 표준제정 및 실시 중의 특허권행사행위(예, 특허매복 행위 등), 저작권단체관리조직 및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문의 남발 등
- □ (위법성판단 및 법적책임) 지재권남용행위에 대한 인정은 지식재산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초 하에 독점행위를 분석/인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되, 그 행위가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쟁배제·제한효과를 분석해야 함
 - 한편, 지재권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지, 위법소득 몰수 및 전년도 매출액의 1%~10%내에서 과징금을 병과 조치함